자산 회수와 몰수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CDSA에 따른 몰수

부패·마약거래 및 기타 중대범죄(이익몰수)법(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CDSA)에 따라 법원은 검찰총장(Public Prosecutor)의 신청에 의하여 마약거래 또는 중대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몰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몰수 제도는 범죄의 도구를 훨씬 넘어서는 범위에 미칩니다. section 4(5)는 이 법이 "싱가포르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모든 재산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합니다. section 6(6)과 section 7(6)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으로서 그의 알려진 소득원에 비해 과도한 재산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범죄로 인한 이익으로 추정됩니다. section 10과 section 11은 이익의 산정에 관한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1]

이 추정은 피고인에게 무거운 입증책임을 전가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몰수가 합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설명하지 못하는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몰수보다 다투는 심리에서 더 많은 것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2023년 사건은 이러한 역학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도주한 피고인과 사망한 피고인

금융범죄에는 재판을 받기 전에 관할권을 떠나는 피고인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DSA는 유죄판결의 의제를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합니다. 도주한 자는 여러 요건 가운데 특히 수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재를 찾거나 체포하거나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 마약거래 범죄 또는 중대범죄로 "taken to be convicted"(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도주 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확신하지 않는 한 그러한 간주 유죄판결에 근거하여 몰수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section 31은 사망한 피고인에 대해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일반적인 추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대신 6년의 소급 조사기간이 적용됩니다.[2]

이들 규정은 형사범죄와의 연결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유죄판결 없는 몰수(non-conviction-based forfeiture)에 근접하는 수단을 싱가포르에 제공합니다. 이는 국경 간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주범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손이 닿는 자산은 싱가포르의 은행 계좌, 부동산 및 회사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외국 몰수명령의 집행

형사사법공조법(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ct, MACMA) section 29에 따라 지정 외국은 법무장관(Attorney-General)에게 "싱가포르에 소재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재산에 대한 외국 몰수명령의 집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그러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고등법원 일반부에 외국 명령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다음의 경우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더 이상 상소의 대상이 아닐 것, 출석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이 방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전에 통지를 받았을 것, 그리고 집행이 "정의에 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령이 충족되면 등록은 취소되어야 합니다.[3]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이 제도는 제3자를 보호하는 조건 아래 싱가포르 법원을 통해 외국이 싱가포르 내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확정된 외국 명령에 의존하므로 자국 법원이 제대로 기능하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외국 판결이 지연되거나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 자산은 수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처분이 금지된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1MDB: 압류와 반환

1MDB 사건은 자산 회수의 범위와 속도를 모두 보여줍니다. 법무장관실(AGC)과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수사 과정에서 총 2억 4,000만 싱가포르달러의 자산이 압류되었으며, 그중 1억 2,000만 싱가포르달러가 조 로우(Jho Low)와 그 가족의 소유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018년 9월 하급법원(State Courts)은 1,530만 싱가포르달러를 말레이시아에 반환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여러 대륙에 걸친 자산을 대상으로 민사몰수 소송을 제기한 미국은 2021년 8월 총 12억 미국달러를 회수하여 반환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4]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활용 가능한 수단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미국 검찰은 *in rem*(대물적) 민사몰수를 통해 형사 유죄판결 없이 자산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로부터의 반환에는 형사 수사와 연계된 절차에서 내려진 싱가포르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였습니다.

2023년 자금세탁 사건

두 번째 사례는 2023년 8월 15일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자금세탁 사건입니다. 외국인 10명이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13개월에서 1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이 몰수당한 자산은 합계 약 9억 4,400만 싱가포르달러에 달했습니다. 2024년 11월 18일에는 수배 중이던 피의자 17명 중 15명이 약 18억 5,000만 싱가포르달러의 자산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로써 총액은 약 28억 싱가포르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금액에 비해 형량은 짧았습니다. 실질적인 제재는 몰수였습니다. 몰수의 위협은 관할권 밖에 있는 자들이 재판을 받으러 돌아오지 않고도 자산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그 규제상의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후속 조치는 제E편 제VI장에서 다룹니다. 후속 조치에는 2025년 7월 4일 싱가포르 통화청이 발표한 9개 금융기관에 대한 총 2,745만 싱가포르달러의 제재금이 포함됩니다.[5]

몰수 자금의 귀속

몰수된 수익과 기소유예합의에 따라 지급된 제재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소유예합의에 따른 제재금과 환수된 이익은 통합기금(Consolidated Fund)에 납입됩니다. 합의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잊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 뇌물 사건에서 피해자는 대개 외국 국가나 국영기업이며, 그 청구는 자국 법원에서 또는 회사와의 자체 합의를 통해 추구됩니다. 시트리움(Seatrium) 합의의 상계 조항은 브라질도 청구하는 자금을 싱가포르가 가져가는 일을 피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주

1. CDSA, s 4(5) 및 ss 6–7(몰수명령)(lawplayer.com에 게재된 조문,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CDSA, ss 6(6), 7(6), 10(1) 및 11(1)(lawplayer.com에 게재된 조문,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

2. CDSA, s 29(1), (2)(b)(ii) 및 (3)(b)(ii)(lawplayer.com에 게재된 조문,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CDSA, s 30(lawplayer.com에 게재된 조문,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CDSA, s 31(4)–(6)(lawplayer.com에 게재된 조문,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

3. MACMA, s 29(1)(a) 및 (b)(lawplayer.com에 게재된 조문,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MACMA, s 30(1), (2) 및 (4)(lawplayer.com에 게재된 조문,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

4. Wikipedia, “1Malaysia Development Berhad scandal”(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싱가포르 관련 부분: 총 2억 4,000만 싱가포르달러의 자산이 압류되었고 그중 1억 2,000만 싱가포르달러가 Jho Low와 그 가족 소유였음; 2018년 9월 하급법원이 1,530만 싱가포르달러의 말레이시아 반환을 허가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함; Wikipedia, “1Malaysia Development Berhad scandal”(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1년 8월 기준 미국은 “recovered and returned a total of US$1.2 billion of 1MDB funds misappropriated within its jurisdiction”. ↩

5. Wikipedia, “2023 Singapore money laundering cas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3년 8월 15일 압수수색; 10명 유죄판결; 유죄판결을 받은 10명이 9억 4,400만 싱가포르달러를 몰수당함; 2024년 11월 18일 수배 피의자 17명 중 15명이 약 18억 5,000만 싱가포르달러를 포기하기로 합의; 총액 약 28억 싱가포르달러; Wikipedia, “2023 Singapore money laundering cas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5년 7월 4일 MAS가 9개 금융기관에 총 2,745만 싱가포르달러의 제재금을 부과.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